

별 첨

제1차(2016~2020)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2016. 2.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목 차

I. 추진 배경 및 경과	1
1. 추진배경	1
2. 추진경과	3
II. 노숙인복지정책의 발전과정 및 평가	4
1. 노숙인복지정책의 발전 과정	4
2. 노숙인 복지정책의 성과와 과제	6
III. 노숙인복지정책의 여건 및 원칙	8
1. 노숙인복지정책의 여건	8
2. 노숙인복지정책의 원칙	12
IV. 노숙인 복지 추진방향	15
1. 비전 및 정책목표	15
2. 추진방향	16
3. 사업대상	17
V. 노숙인복지 분야별 세부과제	18
1. 【예방】 노숙인 예방을 위한 지원시스템 확립	18
2. 【지원】 노숙인 특성별 지원체계 구축	24
3. 【사회복귀】 효과적인 재정착을 위한 주류복지서비스 연계	38
4. 【인프라】 노숙인 정책 인프라 강화	41
VI. 성과지표 및 연도별 목표	47
VII. 과제별 소관부처	48

I. 추진 배경 및 경과

1. 추진배경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및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12.6)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매5년 마다
노숙인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제1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 2016 ~ 2020)

◆ 노숙인 종합계획의 주요 사항(노숙인복지법 제7조)

1. 노숙인 등에 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노숙인 등의 발생예방·사후관리 및 감소방안
3. 정책성과 지표와 재정계획
4. 노숙인시설의 설치·확보 및 주거지원·복지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
5.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6. 노숙인 등의 보호와 자립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숙인 등 정책에 관한 사항

○ 분절적·사후문제 해결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노숙인 관리의 체계화

- 노숙인 종합계획 수립 통해 향후 5년간 노숙인정책의 목표 및 중점 추진 방향 공유
- 예산, 인력, 조직 등 소요자원의 효율적 관리 위해 성과지표 설정

- 노숙인복지종합계획을 바탕으로 관계 중앙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 시행계획 수립·시행

노숙인복지법 제 8 조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노숙인 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추진경과

- 노숙인복지법 제정을 위한 연구('10. 2월)를 통해 노숙인 복지법 제정 추진
- 주거취약계층 전국실태조사('11.12월)를 통해 근거자료 확보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12.6.8)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노숙인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용역 실시('12.12)
- 노숙인 특성에 따른 시설 유형별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13.11)
- 노숙인 발생원인 규명 및 주류복지체계 연계방안 연구 ('14.12)
- 「제 1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노숙인복지시설협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5회, '14 ~ '15.6)
- 노숙인복지종합계획 초안 마련('15.6)

Ⅱ. 노숙인복지정책의 발전과정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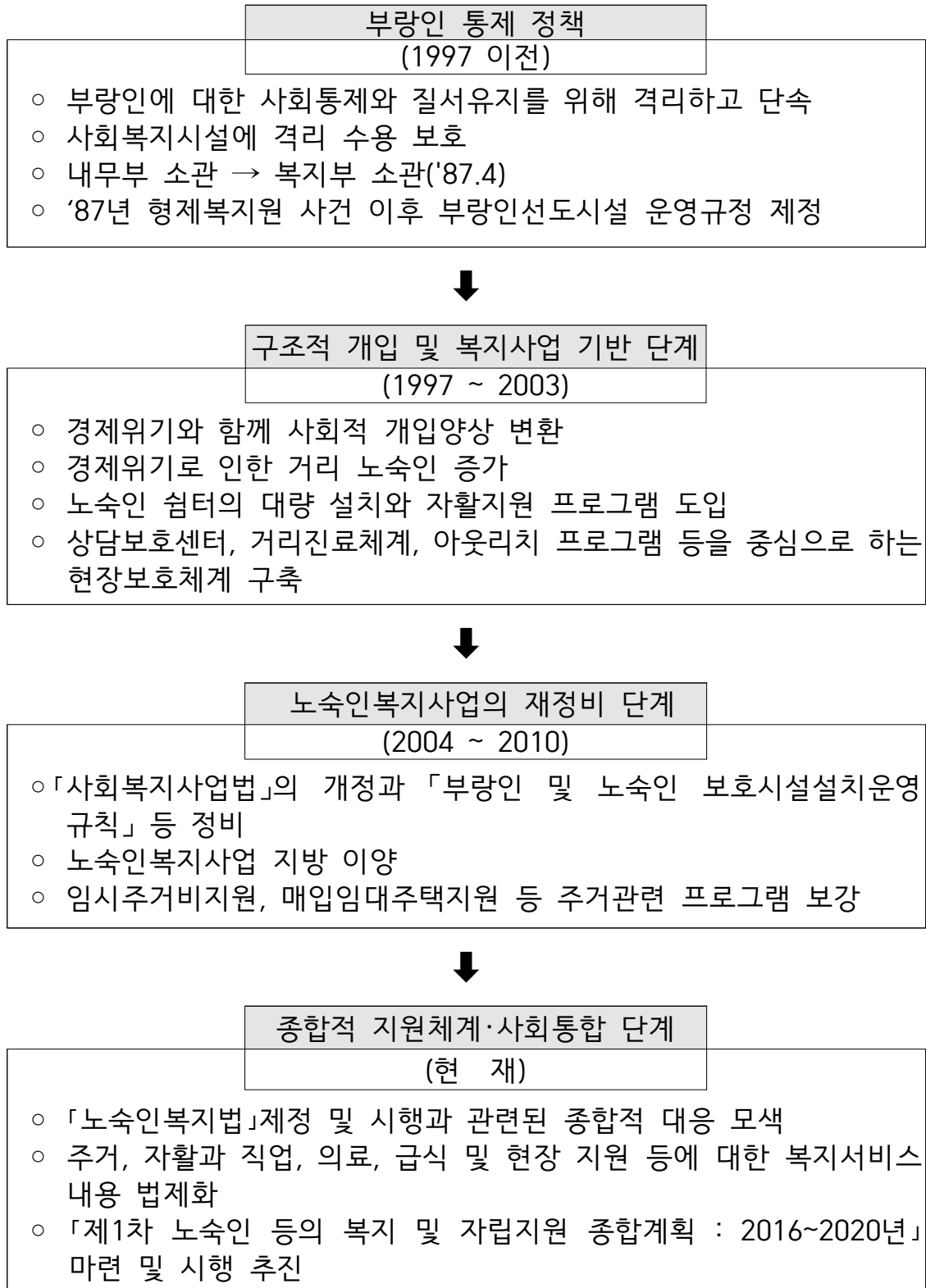
1. 노숙인복지정책의 발전 과정

□ 노숙인복지정책의 발전과정

노숙인복지정책은 부랑인복지시설 운영에 집중되어 있던 것이 '97년 외환위기에 따른 거리노숙인 증가 후 체계화된 노숙인복지 제도로 개편되고 있음.

- 첫 번째 시기(1997 이전)는 부랑인 보호 대책시기로 통제적 개입이 중심이 되어 사회통제와 질서유지를 위해 격리 및 단속
- 두 번째 시기(1997 ~ 2003)는 1997년 경제위기로 노숙인 쉼터의 설치와 자활지원 프로그램 도입으로 실직 노숙인의 사회복귀 도모
 - 2000년 이후 자활 및 재활지원체계가 제도적으로 안정되며 상담 보호센터와 아웃리치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현장보호체계 구축
- 세 번째 시기(2004 ~ 2010)는 2004년 이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과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설치 운영 규칙」 등의 정비로 법적 제도화 마련
 - 노숙인복지사업 지방이양으로 정책 프로그램 이원화되고 임시 주거비지원, 매입임대주택지원 등의 주거관련 프로그램이 보강
- 현재(2011 ~)는 2012.6월 노숙인복지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포괄적 정책수립의 기반이 마련되어 종합적 대응모색의 시기
 - * 주거, 자활, 직업, 의료, 급식 및 현장지원 등 복지서비스 내용이 종합적으로 법제화

□ 우리 나라 노숙인 정책의 변천 과정



2. 노숙인 복지정책의 성과와 과제

□ 노숙인 복지정책의 성과

- 사회 보호 목적의 부랑인 통제정책에서 벗어나 복지정책의 대상
- 경제위기 이후 부랑인 및 노숙인에 대한 사회구조적 원인 파악과 자활을 위한 개입 모색
- 부랑인 및 노숙인에 대한 이원화된 정책지원을 극복하고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법 제정('12)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 재활 및 요양시설, 노숙인 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등 다양한 형태의 노숙인 복지시설 마련
- 주거지원서비스, 의료지원서비스, 고용지원서비스 등 주거와 복지, 의료, 자활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지원 체계 마련
- 변화된 환경 속에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마련을 위한 「제1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마련 및 시행

□ 노숙인 복지정책의 과제

- 노숙인 정책의 지역적 편차를 좁혀 모든 노숙인 등이 기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숙인 정책 가이드라인 제시

- 상대적으로 기존 복지전달체계에서 소외되었던 노숙인에게 복지 서비스 및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자원와의 연계 강화
- 노숙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자체 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
- 주거지원과 복지서비스 지원의 통합을 위한 중앙정부의 협력구조 필요
- 분절적이고 파편적 서비스 제공이 아닌 연속성 있는 보호체계 구축
- 노숙인 정책의 또 다른 주체인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의 구축

Ⅲ. 노숙인복지정책의 여건 및 원칙

1. 노숙인복지정책의 여건

- 전체 노숙인 등의 수는 약 12만여명 : 시설생활 노숙인(1만1천여명)은 지속 감소 중이고 거리노숙인(1천여명)은 소폭 감소하거나 현상유지 중임('14.12월)
- 지역적으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경기 등 대도시 중심으로 노숙인 거주
※ 노숙인 12,347명, 쪽방주민 6,147명('14. 12월말 기준)
- 노숙시설별 노숙인의 특성과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각 지원체계의 특정 욕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연도별 노숙인 등의 현황(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15)>

(단위 : 명)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15,785	15,173	14,266	14,288	13,930	13,152	13,145	12,391	12,656	12,347
자활	3,763	3,563	3,363	3,479	3,404	3,117	3,282	2,741	2,095	1,949
일시보호	-	-	-	-	-	-	-	-	844	899
거리	959	1,293	1,181	1,317	1,260	1,077	1,121	1,081	1,197	1,138
재활요양	11,063	10,317	9,722	9,492	9,266	8,958	8,742	8,569	8,520	8,361

< 시도별 노숙인 현황(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15)>

(단위 : 명)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12,347	4,248	884	1,251	809	167	359	53	112	1,181	341	802	78	229	764	391	510	168
자활	1,949	1,116	161	132	38	16	112	30	-	216	50	17	25	36	-	-	-	-
일시보호	899	636	38	22	11	-	20	7	-	93	4	22	25	9	1	-	-	11
거리	1,138	308	124	124	141	6	38	16	-	294	50	6	28	-	-	-	1	2
재활요양	8,361	2,188	561	973	619	145	189	-	112	578	237	757	-	184	763	391	509	155

○ (재원의 이분화) 기존의 부랑인 시설인 **재활·요양시설**과 거리노숙인 중심 시설인 **자활·일시보호시설** 등으로 구분되어

- **재활·요양시설** 운영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거리노숙인사업·자활** 및 **일시보호시설 운영·쪽방주민지원사업** 등은 지방이양사업('05)임

☞ 따라서 「지방분권특별법」에 따라 **지방이양된 사업은 지자체 책임하에 운영**

□ 노숙인복지 전달체계

○ 노숙인시설은 **생활시설**인 자활·재활·요양시설과 **이용시설**인 종합지원센터·일시보호시설·급식시설·쪽방상담소 등으로 구분

<노숙인시설 현황(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15)>

(단위 : 개소)

시설유형	합 계	종합지원 센터	일시보호 시설	자활시설	재활·요양시설	쪽 방 상담소
시설 수	150	10	8	64	58	10

- 노숙인지원서비스는 거리노숙인 응급지원서비스, 주거지원서비스, 급식지원서비스, 의료지원서비스, 고용지원서비스가 있음
- 전국의 노숙인 시설은 150개가 분포하고 있으며 1,935명의 종사자가 근무를 하고 있음(15)

<노숙인시설 현황(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15)>

(단위 : 개소)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150	52	14	10	8	2	8	1	1	18	8	4	1	5	7	4	4	3
종합지원센터 (구,상담보호센터)	10	2	2	1	-	-	1	-	-	3	-	-	-	-	-	-	-	1
일시보호시설	8	4	-	1	-	-	1	-	-	1	1	-	-	-	-	-	-	-
노숙인자활시설 (구,노숙인쉼터)	64	27	5	5	3	1	4	1	-	10	4	1	1	2	-	-	-	-
노숙인재활·요양시설 (구,부랑인시설)	58	14	5	2	4	1	1	-	1	4	3	3	-	3	7	4	4	2
쪽방상담소	10	5	2	1	1	-	1	-	-	-	-	-	-	-	-	-	-	-

□ 노숙의 결정적 계기에 대한 분석

- 노숙인은 부채증가로 인한 신용불량 혹은 파산(41.9%), 임대료 연체로 인해 집에서 쫓겨남(24.5%), 직장으로부터 쫓겨남(13.4%) 등 경제적 요인

⇒ 신용회복, 근로 등 경제적 안정을 통한 지역사회 복귀 필요

- 이혼 및 결혼관계 해체(31%), 가정폭력으로 인한 가출(10.5%), 사회복지시설 퇴소(8.3%), 교도소 출감(8.3%) 등 제도적 연계단절에 따른 사회적요인

⇒ 지지망을 확대하고 사회적 연계를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필요

○ 정신병 증상의 급격한 악화(13.0%), 알코올 중독 또는 마약중독 (12.3%) 등의 개인적 요인

⇒ 중독지원센터,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과 연계하여 상담, 치료를 통하여 지역사회복귀

노숙의 결정적 요인(복수응답: N=277, 성공회대학교)

	카운트	퍼센트
가정폭력으로 인해 부모님의 집으로부터 나옴	29	10.5%
본인의 이혼 및 결혼관계 해체	86	31.0%
배우자 사망	9	3.2%
사회복지 시설에서 퇴소	23	8.3%
군대제대	8	2.9%
교도소 출감	23	8.3%
정신병 증상의 급격한 악화	36	13.0%
알코올 중독 또는 마약 중독	34	12.3%
부채증가로 인한 신용불량 혹은 파산	116	41.9%
임대료 연체로 인해 집에서 쫓겨남	68	24.5%
직장으로부터 쫓겨남	37	13.4%
전체	469	169.3%

2. 노숙인복지정책의 원칙

- 기존 복지서비스와의 연계 강화
- 노숙의 특성별 맞춤형 정책 추진
- 소득, 일자리, 주거, 의료 등 모든 생활영역에 걸쳐 범부처 차원의 정책 추진
- 다양한 경로(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을 통한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보호의 원칙 준수
- 기존 시설의 활용과 단계적 전환의 원칙
(대규모 시설 → 소규모시설 → 주거지원으로 단계적 전환)

□ 기존 복지서비스의 연계를 통한 보호체계내 흡수 필요

- 다른 복지대상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존 복지서비스체계에 소외되었던 이들을 기존의 다양한 복지 전달와의 연계 중요

□ 노숙의 특성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 거리노숙인에게는 거리 노숙 및 장기화를 예방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재활시설 입소자에게는 근로와 생활기술 습득 등으로 사회 복귀 지원
- 건강상 이유로 장기입소가 필요한 재활 요양시설 노숙인은 시설의 환경개선, 건강회복 지원하고, 특히 일 할 능력이 있는 재활시설 입소자에게는 재활 프로그램 운영으로 재활 지원

□ 소득, 일자리, 주거, 의료 등 모든 생활영역에 걸쳐 범부처 차원의 정책 추진

- 복지부는 노숙인시설서비스 지원 및 노숙인복지서비스 조정의 역할
- 국토부(주거지원), 고용부(고용지원)등 노숙인 지원 유관부처와 협력

□ 다양한 주체(지자체, 민간단체 등)를 통한 유기적 서비스 제공

- 노숙인지원정책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간 역할 분담과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서비스 제공 필요
 - 중앙정부 : 노숙인복지정책의 수립 및 조정, 주거·의료·고용 등 관련부처와의 협력
 - 지방정부 : 지방차원의 전략과 실행계획의 수립, 지역 내 서비스 자원의 효과적인 조정, 지역내 협력 및 혁신 체계 확보
 - 민간기관 : 민간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민간 자원활동가 활용 확대, 노숙인에 대한 직/간접적 서비스의 지원 및 관리

□ 지역사회 보호의 원칙

- 지역사회로의 조속한 복귀를 가능하게 하고 시설-지역사회 간의 연계 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보호의 지속성을 위한 연속체계 강화
 - 지역사회와의 소통강화로 지역사회와의 상호간 영향력 확대

□ 기존 시설의 활용과 단계적 전환

- 시설 내의 통합적 서비스 보다는 거주시설로서의 기능과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도모
 - 중장기적으로는 대규모 시설 → 소규모시설 → 주거지원으로 단계적 전환
- 각 기관 특성별 이용자 욕구에 맞춘 필수적 서비스 제공

IV. 노숙인 복지 추진방향

1. 비전 및 정책목표

목 적

복지서비스의 지원을 통한 노숙인의 예방 및 사회복귀 지원



목 표

- 예방-재활-자립까지의 연속적 지원체계 구축
- 주거-의료-복지의 통합적 접근을 통한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
- 현황·실태조사를 통한 근거중심의 노숙인 지원사업 체계화

분야별
추진
과제

4대 분야

13대 세부 추진 과제

1.(예방) 노숙인 예방
및 초기 노숙인을 위
한 지원 시스템 확립

- ① 노숙유입 예방을 위한 지원
- ② 효과적인 현장보호활동 체계 구축

2.(지원) 노숙인 특성별
지원체계 구축

- ① 취약시기 거리노숙인 보호대책
- ② 노숙인시설체계의 전문화
- ③ 노숙인 주거지원사업 강화
- ④ 노숙인 의료지원 접근성 향상
- ⑤ 노숙인 고용지원 강화

3.(사회복귀)재정착을
위한 관련 복지서
비스 연계

- ①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원
- ② 관련 복지서비스와 연계
- ③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4.(인프라)질 높은 서비스
를 위한 인프라 강화

- ① 거리 노숙인 현황 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 ②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정책모니터링 체계 구축
- ③ 노숙인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

2. 추진방향

-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노숙이 발생하므로 **근본적인 노숙인의 감소를 위해서는** 가족 해체 문제, 경제 활성화, 실업 대책 등의 **경제·사회문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선행되어야**
- 이번, 노숙인 종합계획은 **거리노숙인과 노숙인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노숙 취약계층의 노숙 방지 예방 및 특성별 지원을 통한 사회복귀에 중점**

□ 【예방】 취약계층의 거리노숙 유입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시스템 마련

- 기존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및 노숙의 가능성이 높은 집단에 대한 **예방적 지원 강화**
- 현장보호활동(아웃리치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노숙 조기발견과 거리로의 유입 가능성 축소**
- 거리에서 생활하는 위기 노숙인에 대한 응급지원을 통해 조속히 거리노숙을 벗어나게 함으로써 **계획 기간 내 거리노숙인의 감소 유도**

□ 【지원】 거리노숙인과 만성적 노숙인의 특성별 복지지원체계 구축

- 노숙인 시설의 기능 재편과 시설에 생활하는 노숙인의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로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의 감소 유도
- 노숙인 특성에 부합하는 주거, 의료, 고용서비스의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재정착 지원**

□ **【사회복귀】** 효과적인 사회 재정착을 위한 관련복지서비스 연계

- 노숙인이 안전하게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 노숙을 경험한 이들이 거리노숙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고용·의료 등과 관련복지서비스 연계

□ **【인프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강화

- 노숙인 실태조사를 통해 근거에 기반한 노숙인 정책평가 및 노숙인 종합계획의 수립
- 범부처간, 민관합동의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정책모니터링 체계 구축
-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숙인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

3. 사업대상

- 서울·부산·대구 등 대도시 역사 주변의 노숙인 밀집지역에 생활하는 1천1백여명의 거리노숙인
- 전국 17개 시·도에 산재한 노숙인 자활·재활·요양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1만1천2백여명의 시설 노숙인

V. 노숙인복지 분야별 세부과제

1. 【예방】 노숙인 예방을 위한 지원시스템 확립

1] 노숙 유입 예방을 위한 지원

가. 현 황

□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발굴, 정보제공, 지원이 제한적

- 취약계층 중 특히 노숙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발굴 및 지원이 부족
- 제한된 상담 및 정보제공으로 노숙의 장기화 방지 및 지역사회 조기 복귀 지원이 어려움

<주거상담 의뢰받은 기관 비중(서울시, 2013)>

구분	주민센터	사회 복지관	보건소	관리 사무소	기타 복지기관	시민사회 단체	합계
비율(%)	51.3	17.8	3.8	3.7	18.0	5.5	100

□ 사실상 노숙과 유사한 상태이나 국가, 지자체 및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소외계층 존재

- PC방, 찜질방 등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 대한 복지정보 제공 및 상담 지원이 미흡

* 비숙박다중이용업소를 거처로 삼는 인원 : 62,453명(주거취약계층 실태조사, 2011)

나. 추진계획

□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발굴 강화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15.7.1)으로 단전·단수·월세채납 등 노숙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위기가구에 대한 사전 발굴, 지원 가능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지자체의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현장점검 및 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좋은이웃들 등과 연계하여 노숙전락 위험 가구 발굴 강화
- 근로능력이 있는 주거취약 가구는 일을 통한 안정적 주거확보 위해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사업 또는 자활사업과 연계하여 일자리 알선

- 행복e음 내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15.12.15 오픈)을 활용한 위기 가구 발굴

□ 노숙위기 계층에 대한 공적자원 및 민간 자원연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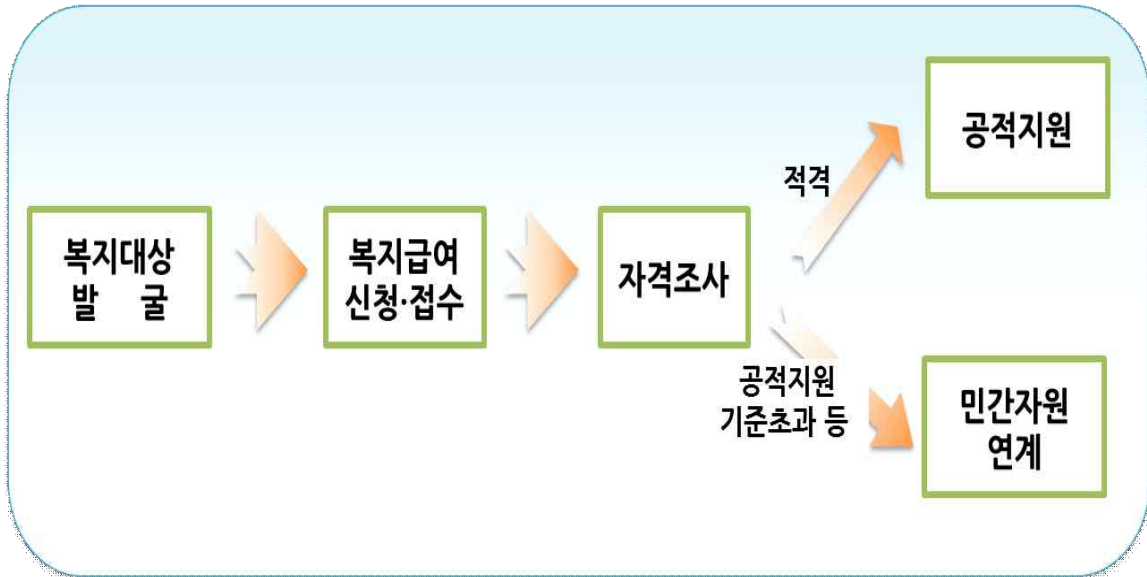
- 소득기준 등이 적합한 경우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신청 등 관련사회 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한 노숙 방지

* 노인 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서비스 등 관련제도 적극 이용

- 비수급 빈곤층 등 차상위 계층 등은 민간서비스 연계 대상으로 우선 선정, 방문 상담·후원물품 등 지원

* 지역 내 민간 기관과 협력, 활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우선 지원

<행복e음 내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 노숙위גיע층의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정보제공 및 연계 홍보 강화

- 초기 노숙인*의 유입을 차단하고 만성화를 예방하기 위해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시·군·구에 긴급지원 신청 활성화
 - 종합지원센터의 상담사를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상담역량 강화

* 노숙경험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인

- PC방, 찜질방 등 노숙과 유사상태인 다중이용업소 이용자가 거리로 유입되지 않도록 노숙인복지시설 등의 안내를 위한 현장보호활동(아웃리치) 강화
- 노숙인으로 유입 위험이 높은 취약가구가 주로 방문하는 주민센터, 구청 등에 노숙인복지관련 정보의 구비 및 안내상담 시행

□ 효과적인 현장보호활동(아웃리치) 체계 구축

가. 현 황

□ 노숙인 집중지역 중심의 현장보호활동 실시

- 대도시의 거리노숙인 집중지역은 정기적인 현장보호활동이 제공되나, 중·소도시나 거리노숙인 분산지역은 비정기적으로 시행

< 지자체별 종합지원센터 수 및 현장보호활동 상담인력 현황 >

(단위 : 명)

구분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 수	거리노숙인 수 (2014)	아웃리치 상담인력	비고
서울특별시	5	764	40	계절에 따라 유동적 운용
인천광역시	1	139	2	
대전광역시	1	50	7	
대구광역시	1	131	6	
부산광역시	2	110	8	
경기도	2	154	4	
제주특별자치도	1	7	2	
합계	12	1,355	69	

□ 통일적인 현장보호활동 서비스 수준을 위한 매뉴얼 미비

- 현장보호활동 서비스의 수준은 단순한 질서유지 차원인 경우부터 적극적인 서비스 연계까지 지역적 차이가 존재
 - 현장보호활동 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가이드라인이 부재하고, 이에 따른 교육 및 훈련 부족으로 양질의 현장활동 활동 서비스를 제공 불가
- ※ 현재 현장활동 서비스를 위한 매뉴얼을 개발한 지자체는 1곳('13년, 서울시)

나. 추진계획

□ 중앙정부는 현장보호활동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지자체는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의 현장보호활동 계획 수립

○ 매년 지자체는 거리노숙인이 밀집된 지역 및 산재된 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 현장보호활동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현장보호활동 팀별로 관할 구역 내 정기적 보호활동을 통해 지역의
접근성있는 종합지원센터(또는 일시보호시설 및 응급잠자리) 연계 강화

□ 거리노숙인 현장활동 상담원의 전문성 강화

○ 거리노숙인 아웃리치 상담원 전문성 확보 및 거리 활동 전문가 양성

- 거리노숙인 현장활동 매뉴얼의 보급 및 아웃리치 상담을 위한 전문
상담원 훈련 실시
- 전국단위 공통 거리노숙인 상담 매뉴얼의 개발 추진

□ 거리노숙인의 효과적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체계의 구축
(HONet : Homeless Outreach Net)

○ 지역별 소방방재청, 경찰청, 기초자치단체 및 관련 유관 민간단체
등과 노숙인 지원 네트워크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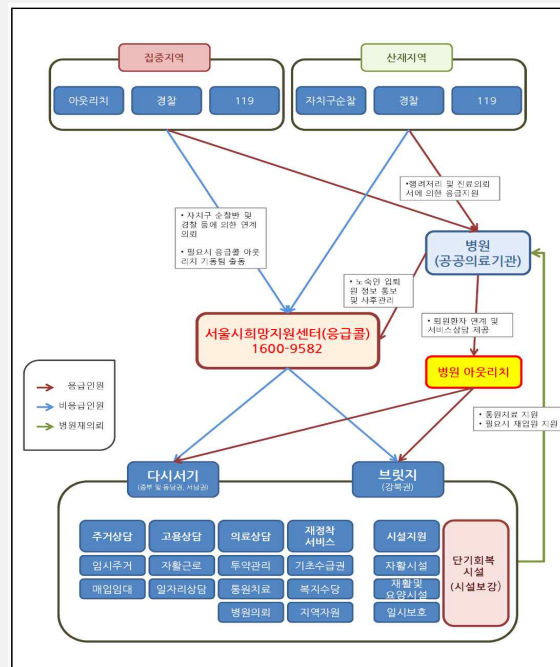
- 지역별 업무협의를 통한 역할 분담 및 상호 이해증진

※ 연간 1회 이상 정기적인 협의추진

■ **거리노숙인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 역할 사례(서울시)**

- **종합지원센터** : 24시간 거리노숙인 신고 접수 대기. 즉시 출동(필요시 경찰청 및 소방방재청 출동요청)
- **경찰청** : 지역내 거리노숙인 발견시 관할 노숙인시설 및 응급대피소 이송지원, 응급상황시 소방방재청 협력을 통한 국/시립병원 응급이송
- **소방방재청** : 응급인원 발생시 즉시 출동 및 현장 응급처치, 경찰청 협력을 통한 국/시립병원 응급이송
- **자치구** : 거리노숙인 상주지역의 지속적인 확인 및 순찰. 노숙인 시설 안내 및 응급상황 발생시 경찰청, 소방방재청 연계 후 종합지원센터 상황 공유
- **국/시립병원(노숙인 지정병원)** : 응급 의료지원 및 입원치료 지원. 퇴원시 종합지원센터 연계로 재노숙의 방지

<그림 4> 서울시 노숙인 아웃리치를 위한 유관기관 역할



2. 【지원】 노숙인 특성별 지원체계 구축

① 취약시기(혹서기, 혹한기) 거리 노숙인 보호대책

가. 현 황

□ 취약시기 집중적인 노숙인 보호대책 수립 필요

- 시설에 입소한 노숙인들과는 달리 거리노숙인 중에는 독거노인, 장애인, 알코올 중독자 등이 많아 혹서기 열사병, 동절기 동사 사고 발생 우려

- 따라서 취약시기에 집중적인 거리 노숙인 보호대책 마련 필요

※ 추진기간 : 7.1 ~9.30(혹서기, 3개월), 11.1 ~3.31(혹한기, 5개월)

- 중앙에서 취약시기 보호대책 수립 후 지자체에 자체실정에 맞는 보호대책 수립하도록 하여 집행을 독려하고 그 실적을 보고 받음

나. 추진계획

□ 응급 잠자리 및 무더위 쉼터 운영

- 동사 및 열사병에 노출된 거리 노숙인에게 응급 잠자리 및 무더위 쉼터 운영

- 거리노숙인 발견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Hot-line* 구축·운영

* 예) 서울 1600-9582(구호빨리) 위기대응콜 운영 중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24시간 운영

- 현장대응팀(사회복지사 등 종합지원센터 기존직원)과 보건팀

(정신보건전문요원, 촉탁의 등)*으로 위기대응팀을 구성·운영

*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상담 등을 통하여 병원입원 치료 등 적극 유도

○ 취약한 노숙인(여성, 만성노숙인)대상으로 임시주거비지원

○ 아웃리치(거리상담) 활동 시 구호용품이 필요한 거리노숙인
침낭, 매트, 얼음물 등 제공

2] 노숙인시설체계의 전문화

가. 현 황

□ 노숙인 시설 유형에 따른 차별화 부족

○ 노숙인시설은 법규상 유형별(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로 구분
되나 실제로는 이용자가 혼재되어 서비스의 특성 및 전문성 부족

<노숙인시설의 유형 및 기능(노숙인복지법 제10조)>

유형	주요기능	비고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 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직업상담 및 훈련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노숙인재활시설	신체 및 정신장애인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국고
노숙인요양시설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국고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 등에게 일시보호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는 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주거·의료·고용지원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응급 조치, 복지서비스 이력관리, 심리상담 등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복지법 11조에 따른 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노숙인복지법 12조에 따른 진료시설	

<노숙인 시설 현황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15)>

(단위 : 개소)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150	52	14	10	8	2	8	1	1	18	8	4	1	5	7	4	4	3
종합지원센터	10	2	2	1	-	-	1	-	-	3	-	-	-	-	-	-	-	1
일시보호시설	8	4	-	1	-	-	1	-	-	1	1	-	-	-	-	-	-	-
노숙인자활시설	64	27	5	5	3	1	4	1	-	10	4	1	1	2	-	-	-	-
노숙인재활·요양시설	58	14	5	2	4	1	1	-	1	4	3	3	-	3	7	4	4	2
쪽방상담소	10	5	2	1	1	-	1	-	-	-	-	-	-	-	-	-	-	-

□ 노숙인시설의 대형화로 인해 입소자의 삶의 질 저하

- 노숙인시설은 타 분야 사회복지생활시설과 같이 대형화로 입소자는 많고 시설공간은 협소
- 노숙인시설은 대부분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기 어려움(보통 1실 5~6명이 사용)

□ 여성·청소년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인원에 대한 보호시설 부족

- 거리 노숙인 중 여성의 비중은 전체의 7.5%(주거취약계층 실태조사, 2011)로 노출을 꺼리는 경향이 있음

※ 실태조사시 전체의 3%로 조사된 결과는 여성노숙인의 실태조사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

- 여성·청소년 등의 노숙인들은 범죄에 노출되는 등 더욱 취약하여 우선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은 부족

※ 여성전용시설은 자활시설 5개소, 재활·요양시설 2개소, 일시보호시설은 전무

나. 추진계획

□ 노숙인시설 유형에 알맞는 시설·인력기준 마련

- 노숙인시설(자활, 재활, 요양) 설치기준 및 인력배치기준이 시설유형에 적합하도록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실시
 - 재활시설과 자활시설은 생활공간 확충 등을 통하여 사생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설설치기준 강화

□ 노숙인시설 유형과 이용자 특성에 맞는 입소절차 개선

- 신규 입소자들은 노숙인시설 유형과 이용자의 특성 및 욕구에 적합한 시설입소가 가능하도록 입소 안내
- 기존의 입소자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노숙인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적합한 시설에 입소될 수 있도록 추진

□ 여성·청소년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노숙인에 대한 보호 강화

- 여성, 청소년 등 상대적 취약 노숙인에 대해 현장보호활동 및 상담 등의 보호활동 강화
- 여성노숙인이 주로 발견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여성노숙인 전용 일시보호시설 설립 추진

3 노숙인 주거지원사업의 강화

가. 현 황

□ 국토부·지자체 등에서 실시하는 취약계층대상 주거지원사업의 물량이 부족하고, 노숙인은 상대적으로 더욱 취약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시행이후 2014년까지 실적(대한변협, 2015)>

(단위 : 명)

구분	합계	쪽방거주민	비닐하우스	고시원/여인숙	범죄피해자	노숙인
인원	2,913	1,596	973	307	18	19

○ 임시주거비지원사업*, 임대주택지원사업** 등 노숙인대상 주거지원 사업 유형이 다양화되는 성과는 있으나, 수량은 여전히 부족하고, 지원시기도 한시적임(2~6개월)

* 지자체 등에서 주거를 마련하여 노숙인을 입주시킴(노숙인은 무월세로 거주)

** 지자체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매입하여 제공하고 거주 노숙인은 월세 부담

※ 서울시 임시주거비지원 사업 실적 322(11년), 490(12년), 572(13년)

○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지원 주택사업은 지자체 위탁운영, 민·관협력, 민간운영의 3개 형태로 운영 중이나 개소수가 매우 적음(현재 4개소에 불과)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 현황 >

구분	희망원룸(2개소)	굿피플하우스(1개소)	은혜원룸(1개소)
입주자 수	55명	30명	26명
운영형태	지자체(서울시)	민·관협력(종민협*)	민간(원불교)

* 종교계(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노숙인지원 민관협력 네트워크('12)

□ 만성적 거리노숙인에 대한 주거지원 미흡

- 알콜중독, 정신질환 및 장애 등을 동반한 만성적 거리노숙인의 주거지원 미흡
 - 주거지원사업이 자활의지의 여부에 따라 주로 지원되고 있어 노숙인 중 가장 취약한 만성적 거리노숙인은 주거지원사업에서 배제되는 경향 있음

나. 추진계획

□ 거리노숙 방지를 위한 노숙인복지시설 보호 강화

- 시설을 이용하기 원하는 노숙인이 거리에서 생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숙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 강화
 - 현장보호활동시 거리노숙인의 시설입소를 유도하여 거리에서 잠자는 분을 최소화

□ 자립의지, 보호의 필요성을 감안한 주거지원사업 물량확대

- 노숙인의 특성과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사업의 확대 지속 추진
 - 임시주거비지원, 매입임대주택지원 등 주거지원사업의 확대 및 민관 참여 유도
 - 노숙인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의 단계적 확대
 - 매년 노숙인등에게 우선 공급하는 물량을 60개소 이상 확보 추진(국토부)
- * 매입·전세임대주택을 노숙인에게 제공하고 거주 노숙인이 월세+보증금 부담

<연도별 노숙인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는 매입·전세임대주택 확보 수량>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호 수	60호	60호	60호	60호	60호

- 질환이나 장애를 동반한 노숙인은 단순한 주거지원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지원주택지원 확대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주택 운영 계획>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사업 확대 및 안정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운영 개소 수	4	5	6	7	8

□ 여성 등 취약노숙인에 대한 주거우선지원

- 지자체에서 여성·청소년·가족노숙인, 알코올중독 및 정신질환 노숙인 등이 임시주거비 우선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개선

4] 노숙인 의료지원 접근성의 향상

가. 현 황

□ 노숙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정 및 시설 이용 어려움

- 노숙인에게 지원되는 노숙인의료급여1종은 지정 및 취소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요건도 까다로와 적기 발급 및 취소 곤란

※ 노숙인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 총 835명, 서울 805명, 부산 22명, 대구 3명, 경기도 5명('14.12.31기준.)

<노숙인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인적기준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법률」 따른 “노숙인 등”에 해당하는 자 •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노숙인 자활시설 입소자 중 노숙해당기간이 지속적으로 3개월이상 유지된 것으로 확인된 사람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6개월 이상 체납된 사람
신청절차	노숙인시설에 신청 → 지자체에서 결정(시·군·구 의료급여사업팀) → 자격상실 사유 발생시 자격상실조치(시·군·구 의료급여사업팀)
기타	(중지일) 해당시설 퇴소일 *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경우 월 20일(연장시 30일) 범위 내에서 수급중지

○ 또한 노숙인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지정병원(254개소)을 이용해야 하나 열악한 접근성 등으로 이용률 저조

※ 노숙인의료급여 1종은 의료급여증 대여, 의료쇼핑 등 우려하여 지정병원제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현황>

구 분	계	1차의료기관	2차의료기관
계	254	209	45
서울	35	27	8
부산	17	16	1
대구	9	8	1
인천	6	5	1
광주	6	5	1
대전	7	5	2
울산	6	5	1
경기	45	41	4
강원	12	9	3
충북	14	13	1
충남	14	10	4
전북	16	10	6
전남	25	19	6
경북	24	21	4
경남	15	14	1
제주	2	1	1

운영

* 지정병원 대부분 국공립 병원(1차 의료기관은 보건소), 민간병원은 3개소

□ 현장의료지원체계의 지역별 불균형 심화

- 거리노숙인이 이용하기 쉬운 무료현장진료소(5개소)의 부족으로 인한 의료접근성의 약화
 - 서울, 부산, 대구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에 한하여 거리노숙인 대상 현장진료소 운영
 - 따라서, 진료소가 운영되지 않거나, 아웃리치 상담체계가 부족한 지역의 경우, 적절한 의료개입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방치되는 사례 발생
 - 또한, 현장진료소가 운영되어도 공중보건의 수가 부족하고, 공중보건의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의료질도 보장하기 어려움

<표 18> 노숙인현장진료소 및 공보의 배치 운영 현황

구분	서울	대전	대구	부산	합계
현장진료소	2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5개소
공보의 수	4명	1명	1명	1명	7명

※ '16년 이후 공중보건의 공급 부족으로 무료진료소에 더 이상의 지원 불가

□ 만성적 거리노숙인에 대한 의료접근성의 미비

- 만성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거리노숙인에 대한 의료적 개입강화 필요
 -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만성질환 노숙인에 대한 보건팀 운영
 - ※ 서울 : 정신질환 및 알코올중독 노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정신과 상담제공(주3회)
- 민간 협력 강화를 통한 민간자원의 유기적인 활용방안 마련 필요

- 일부 지자체 및 시설은 민간의료단체 등과의 협약을 통하여 노숙인 민간진료를 유도하고 있으나, **민간의료기관의 참여부족**

※ 노숙인시설과 의료기관 자매결연, MOU체결하여 우선진료 실시

나. 추진계획

□ 노숙인 의료접근성 강화를 통한 건강수준 향상

○ 노숙인지정병원의 단계별 확대

- 광역시 등 노숙인이 집중 유입된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 확충('15년 254개소 → '20년 264개소)

<연도별 노숙인 지정병원 확충 계획>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노숙인지정병원수	254개소	256	259	261	264
증감	-	2	3	2	3

□ 노숙인 현장진료소 운영 확대

○ 노숙인 밀집지역 현장진료소 설치 권고

- 100인 이상의 노숙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진료소 설치를 권장하고 소규모 노숙인 발생지역은 순회진료팀을 구성

□ 만성적 노숙인에 대한 의료적 지원 확대(정신건강, 알콜중독)

○ 지역 정신보건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만성적 노숙인의 의료지원 확대

- 지역정신보건사업 내 노숙인 대상 명시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사례관리 강화

※ 전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개수 : 50개소

○ 아웃리치-위기관리사업과 연계된 **노숙인의료지원체계**의 개편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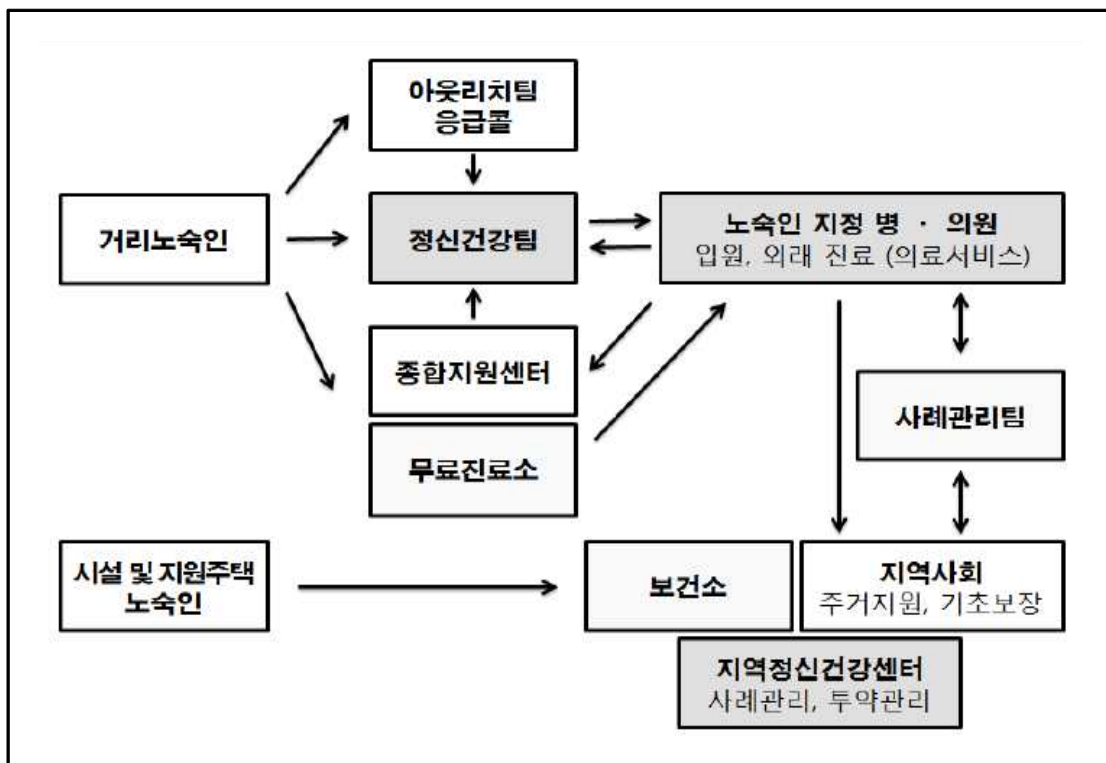
- 위기관리사업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일부지역에서 운영하는 상시운영체제로 전환

○ 노숙인 의료지원을 위한 **지자체-민간 MOU 체결** 등 협력체계 구축

- 민간의료단체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민간의료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의료사각지대 해소

※ 서울시의 경우 시립보라매병원과 협력관계 체결

<노숙인 의료지원체계 재편>



5 노숙인 고용지원의 강화

가. 현 황

□ 노숙인들의 고용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부족

○ 노숙인들의 고용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활용 정도는 낮음

- 취업성공패키지 등 고용부에서 지원하는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참여율 미흡
- 복지부의 자활사업에도 노숙인들이 일부 참여하고 있으나 노숙인에게 맞는 별도의 자활프로그램이 운영이 미흡

※ 지자체 노숙인 대상 자활사업현황 : (경기) 5개 사업단 50명, (부산) 1개 사업단 15명

<노숙인 대상 취업성공패키지 연계성과(고용노동부, 2014)>

(단위 : 명)

구 분	참여 자수	종료* 자수	취업률 (%)	종료자에 대한 세부 현황			
				취업자		미취업자	
				취·창업자 (일반시장)	공공근로재정 일자리종료자	중도중단 종료자	기간만료 종료자
서울	47	33	63.6	21	2	4	6
부산	12	10	50.0	5	0	3	2
대전,충청	22	17	64.7	11	1	2	3
인천,경기,강원	20	15	20.0	3	1	5	6
광주,전라,제주	5	4	25	1	0	3	0
대구,울산	10	10	20.0	2	0	4	4
합 계	116	89	48.3	43	4	21	21

□ 노숙인시설의 고용지원 연계 기능 강화 필요

○ 대부분의 노숙인시설은 주로 노숙인을 위해서 배정된 단기적 일자리 연계 중심의 고용 지원이 대부분

- 일단 취업해도 조기 사직하는 경우가 많아 노숙인의 특성을 고려한 안정된 일자리 부족

<2012년 고용부 새희망고용센터 취업지원 성과(현장 실태조사,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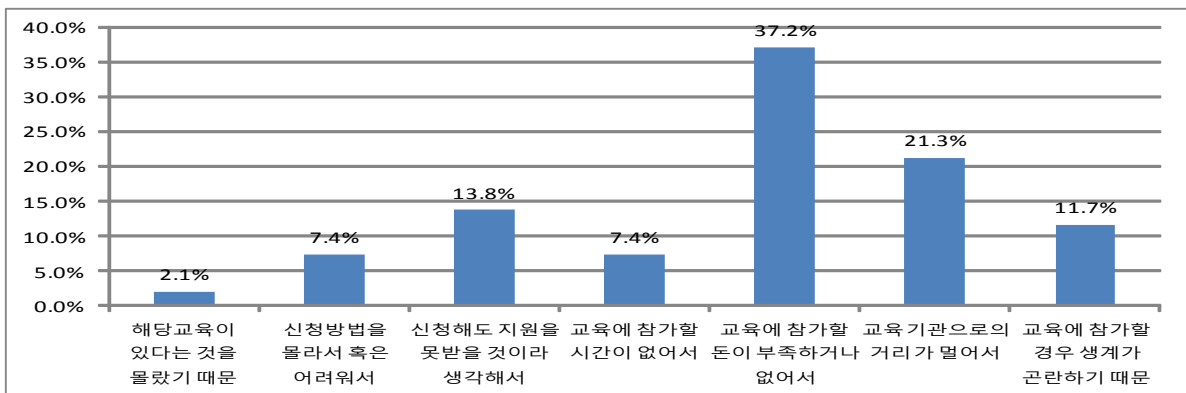
(단위 : 명)

기관 구분		시설 유형	구직	알선	취업	취업세부실적	
						정부	민간
서울	브릿지종합지원센터	종합지원	471	327	153	70	83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종합지원	457	333	185	51	134
부산	부산종합지원센터	종합지원	391	355	34	7	27
대구	대구종합지원센터	종합지원	377	377	72	47	25
인천	인천내일을여는집	자활시설	373	223	52	10	42
합 계			2,069	1,615	496	185	311

○ 일하고자 하는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의 기회제공과 이에 대한 투자 필요

※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 : 비용(37.2%), 접근성(21.3%), 신청해도 지원을 못받을 것 같아서(13.8%), 대체할 생계수단 부족(11.3%)(한국도시연구소 '13년)

<노숙인시설 이용자가 직업훈련을 받지 못하는 이유(한국도시연구소 조사자료, 2013)>



○ 민간 협력 강화를 통한 민간일자리의 적극적 연계 필요

- 노숙인 등을 근로로 연결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등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여 적극적인 연계를 도모할 필요

<노숙인을 고용한 사회적기업 사례 >

구 분	주요업무	채용인원	비 고
빅이슈(Big Issue)	문화잡지 제작 및 판매, 인식개선	50여명	
짜로사랑	두부제작 및 판매	15명	
행복나눔도시락	도시락 주문 제작 및 판매	20명	
두바퀴희망자전거	자전거 재활용 및 판매 / 수리	15명	
두손컴퍼니(Do son)	종이옷걸이 제작 및 판매, 납품	15명	
참살이영농사업단	풍덩이 양식, 영농사업	15명	
늘품공방	목공예, 다양한 소품 제작	7명	

나. 추진계획

□ 노숙인의 직업능력 향상 및 고용연계 강화

- 근로능력과 의지가 있는 인원에 대한 취업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기회 확대
 - 고용노동부, 지자체의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고용이 연계 될 수 있도록 배려 필요
- 노숙인이 진입가능한 일자리의 개발 및 창업지원의 확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확대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노숙인 등이 접근가능한 사회적 일자리의 지속적 발굴 및 증대
 - 지자체의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등을 통한 창업 유도

□ 근로능력이 약한 노숙인에 대한 ‘공공 일자리’ 제공 활성화

○ 거리 노숙인, 시설입소자 중 근로능력이 미약한 노숙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제공 필요

- 노숙인의 생계안정과 자립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 확대

※ 공원청소, 녹지관리, 공공시설물 청소, 자원재활용 등

○ 안정적 주거비용을 마련하여 탈노숙을 유인하는 특별자활사업 실시

※ 코레일 청소사업단 ‘희망의 친구들’ 및 지자체 노숙인 대상 자활사업 실시
(경기) 5개 사업단 50명, (부산) 1개 사업단 15명

3. 【사회복귀】 효과적인 재정착을 위한 관련복지서비스 연계

①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원

가. 현 황

□ 의료기관 퇴원/ 시설퇴소 후 재정착을 위한 지원 부재

○ 노숙인 시설 퇴소 후, 지역사회에 재정착을 위한 상담 및 지원이 미흡

- 주거 및 일자리에 대한 정보, 새로운 사회관계의 형성 및 단절된 관계의 회복에 대한 안내 필요

※ 정부에서는 노숙인에게 동아리활동 지원, 인문학 강좌, 예술학교 운영 등 통해 새로운 사회관계망 형성하는 사업 지원 중(‘15년, 10억7천만원)

나. 추진계획

□ 자립정착금 지원 등 마련

○ 시설퇴소입소시 자립정착금 마련 프로그램 운영·확산

- 시설입소 후 자활프로그램 참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을 저축하여 시설퇴소시 자립정착금으로 사용하거나 일정금액을 추가 지원

※ 희망원룸 퇴소자에게 일정금액(임대료로 받은 금액)을 퇴소시 자립정착금 형태로 노숙인에게 지원

□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사례관리 실시

○ 시설퇴소자, 임시주거입소자, 임대주택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 생활실태 등에 대한 사례관리 실시

- 지자체는 지역사회에 복귀한 노숙인을 일정기간 사례관리 할 수 있도록 기존의 복지전달체계와 연계하거나 인력지원

2] 관련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

가. 현 황

□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로 연계 필요

○ 노숙인 복지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정착을 하여도 다시 거리노숙인으로 전락하는 회전문 현상이 나타남

※ 만기 퇴소한 노숙인 중의 72%, 탈노숙한 사람중의 42%는 노숙인복지시설로 재입소(서울연구원, 한국도시연구원 '15년)

나. 추진계획

□ 관련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

○ 건강관리, 생활관리 등 관련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 지역사회 방문간호사업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 사업이나 생활관리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 정신보건서비스와의 연계 강화

○ 시설 퇴소 이후에도 지역사회 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지역사회에 정착유도

3]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가. 현 황

□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자활의지 고취를 위한 교육

- 시설입소자 대상 교육프로그램은 시설의 특색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나,
 -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사회복지귀를 위한 자활교육이나 사회복지에 따른 신체 및 정신건강 등 교육이 부재

나. 추진계획

□ 거리노숙인을 위한 캠프 운영

- 실제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자활교육을 통한 사회복지 의식고취

- 거리노숙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삶의 목표설정

□ 거리 노숙인의 체험프로그램을 통한 대인관계기술 및 자존감 향상

- 거리 노숙인의 노숙인시설의 입소를 유도하고, 시설생활에 적응하여 궁극적으로 사회복귀를 위한 단체생활의 규칙 등을 접할 기회 제공

* 거리노숙 → 시설입소 → 사회적응훈련 → 사회복귀

4. 【인프라】 노숙인 정책 인프라 강화

① 거리노숙인 현황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가. 현 황

□ 거리노숙인 현황 파악

- 노숙인 정책의 가장 중요과제는 노숙인 등이 거리노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임
- 그러나, 현실은 거리노숙인 현황 파악조차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민간에서 전국적인 일시집계조사(point-in-time counting)을 실시하고 있으나, 자원 부족으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곤란

<최근 5년간 노숙인 실태조사 시행 현황(2014)>

구분	전국노숙인실태조사	지자체 실태조사	조사시기
2010년	민간주도	민간주도	10월
2011년	보건복지부	조사없음	8월
2012년	민간주도	조사없음	10월
2013년	조사없음	서울시	분기별
2014년	조사없음	서울시	분기별

□ 법령에서 정하는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

-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법률」 제9조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 노숙인 등의 현황·욕구 및 심리와 이들에 대한 공공 및 민간의 지원
상황에 대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 주거취약계층 전국실태조사 실시(2011, 한국도시연구소)

나. 추진계획

□ 연도별 거리노숙인 현황 파악

- 기초적인 행정자료 확보를 위해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거리노숙인 현황 파악

□ 법령에서 정하는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시행(복지부)

-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16)하여 정책성과 및 모니터링을
종합계획 수립 근거로 제공

- 정기실태조사 및 1차 노숙인 종합계획 평가 등을 근거로 2차 종합계획 수립('20년)

[2] 협의체에 기반한 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

가. 현 황

□ 노숙인 지원을 위한 중앙부처 협력체계의 미비

- 노숙인의 실질적인 복지지원을 위해서는 주거, 고용, 의료 등 노숙인 지원을 위한 관련부처의 협조가 필수적이나 유관 부처간 업무 협력을 위한 실질적 협력체계 미비

□ 노숙인복지지원을 위한 중앙정부-지방정부간 협력체계 미비

- 현재 노숙인 정책은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협조가 필수적이나
 - 중앙-지자체간 현안 중심의 협의만 이루어질 뿐, 정기적이고 유기적인 논의구조는 부재한 상황

□ 노숙인관련 단체와 (중앙·지방)정부간 민관협력체계 미흡

- 노숙인 관련 민간협력체계는 국고지원사업의 노숙인 재활·요양 시설협의체와 지방이양사업의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등의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으나 중앙-지방 정부와 이들간 협조체계는 약화

<노숙인시설 관련 협의체 운영 현황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2014)>

구 분	영역	시설분류	비 고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전국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사단법인
서울노숙인시설협회	서울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쪽방상담소	사단법인
전국노숙인시설협회	전국		임의단체
NCKK홈리스대책위	-	기독교 노숙인 지원단체	종교법인

나. 추진계획

□ 노숙인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중앙부처 협의체 구성

- 노숙인 지원을 위한 주거, 고용, 의료를 소관하는 중앙부처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련 협력사항을 조율 및 협의

<중앙정부 노숙인지원 협의체 구성>

구 분	부 서	인 원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기초의료보장과, 정신건강정책과	각 1명
고용노동부	직업훈련관련 부서	1명
국토교통부	임대주택관리 부서	1명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	1명

□ 중앙부처 - 광역자치단체-지자체간 노숙인 지원 협력을 위한 회의구조 마련

- 노숙인복지정책, 지자체 현안 등 중장기적인 노숙인 관련 정책 논의 및 조정
- 정기적 회의구조 마련으로 중앙정부-지자체 논의 지속성의 확보

□ 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민관협력위원회 운영

- 노숙인 현장의 의견을 수렴, 정책에 반영하고자 민관협력 위원회 구성
- 평가 및 계획을 위해서 연 1회 운영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안)>

구 분	부 서	인원
노숙인 자활분야	노숙인자활분야 시설 대표	1명
노숙인재활/요양분야	노숙인재활/요양분야 시설 대표	1명
학계	노숙인 등의 연구 경력이 풍부한 학계(교수 등)	1명
공무원	중앙부처 / 지자체	각 1명
민간단체	노숙인 관련 지원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민간단체 활동가 등)	1명

3]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

가. 현 황

□ 배치기준

- 노숙인 시설 입소자가 장애인·노인·정신질환자가 대부분(87.7%)이나,
- 생활복지시설 중 생활지도원 1인당 배치기준은 가장 열악한 상황임

[표 25] 생활복지시설 생활지도원 1인당 배치기준 비교

구 분	중증장애인 시설	아동장애 인시설	지적시각 장애인시설	지체청각 장애인시설	노인요양 시설	정신요양 시설	노숙인 시설
배치기준	4.7	4	5	10	2.5	28	50

나. 추진계획

- 입소자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지도원***도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정신요양시설의 배치기준**에 근접하도록 인력증원을 중장기적으로 추진 검토

* 노숙인시설 기준 현재 50명당 1명임에 반해 정신요양시설은 28명당 1명 수준

※ 규모가 작은 시설부터 점진적으로 개선 추진

VI. 성과지표 및 연도별 목표

성과지표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거리노숙인 수	전년대비 2% 감소	전년대비 2% 감소	전년대비 2% 감소	전년대비 2% 감소	전년대비 2% 감소	
	각 시도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를 통한 행정조사					
시설노숙인 수	전년대비 2% 감소	전년대비 2% 감소	전년대비 2% 감소	전년대비 2% 감소	전년대비 2% 감소	
	$(\text{전년도 시설입소자} - \text{평가년도 시설입소자}) \div \text{전년도 시설입소자} \times 100$					
현장보호활동 (아웃리치) 관리 비율	80%	85%	90%	95%	100%	
	$\text{현장활동 관리 수} \div \text{거리노숙인 수} \times 100$					
주거지원건수	전년대비 2% 증가	전년대비 2% 증가	전년대비 2% 증가	전년대비 2% 증가	전년대비 2% 증가	
	$(\text{임시주거비지원} + \text{공공임대주택} + \text{지원주택} + \text{시설입소}) \div \text{전년도}(\text{임시주거비지원} + \text{공공임대주택} + \text{지원주택} + \text{시설입소}) \times 100$					

VII. 과제별 소관부처

□ 총 4개 분야, 13개 과제

과제명	소관부서	지자체
1. 노숙인 예방을 위한 지원시스템의 확립		
① 노숙유입 예방을 위한 지원		
□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발굴강화 및 공적 및 민간자원연계	보건복지부·지자체	시행
□ 위גיע층의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정보제공 및 연계 홍보강화	지자체	시행
② 효과적인 아웃리치 구축		
□ 아웃리치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가이드 제공 및 계획 수립	복지부,지자체	-
□ 거리노숙인 아웃리치 상담활동의 전문성 강화	지자체	시행
□ 거리노숙인의 효과적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체계의 구축	지자체	시행
2. 노숙인 특성별 지원체계의 구축		
① 취약시기 거리노숙인 보호대책		
□ 응급잠자리 및 무더위 쉼터운영	지자체	시행
□ 종합지원센터 24시간 운영	지자체	시행
□ 지자체별 시행계획 수립	지자체	시행
② 노숙인 시설체계의 전문화		
□ 노숙인시설 유형에 알맞은 시설인력기준 마련	지자체	-
□ 노숙인시설 유형과 이용자 특성에 맞는 입소체계 마련	보건복지부·지자체	시행
□ 여성·청소년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노숙인인에 대한 보호강화	지자체	
③ 노숙인 주거지원사업의 강화		
□ 거리노숙 방지를 위한 노숙인복지시설 보호강화	지자체	시행
□ 자립의지, 보호의 필요성 등을 감안한 주거지원사업 물량 확대	국토교통부·지자체	시행
□ 여성, 만성적 거리노숙인 등 취약노숙인에 대한 주거 우선지원	지자체	시행
④ 노숙인 의료지원 접근성의 향상		

과제명	소관부서	지자체
☐ 노숙인 의료접근성 강화를 통한 건강수준의 향상	보건복지부·지자체	시행
☐ 노숙인 현장진료소 운영 확대	지자체	시행
☐ 만성적 노숙인에 대한 의료적 지원 확대	지자체	
⑤ 노숙인 고용지원의 강화		
☐ 노숙인 고용능력 향상 및 고용연계 강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지자체	시행
☐ 근로능력이 약한 인원에 대한 '공공 일자리' 제공 활성화	지자체	시행
3. 효과적인 재정착을 위한 주류복지서비스의 연계		
①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원		
☐ 자립지원금 지원 등 마련	지자체	시행
☐ 재정착을 위한 사례관리 실시	지자체	시행
② 관련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		
☐ 관련서비스와 연계	지자체	시행
☐ 정신보건서비스와의 연계 강화	지자체	시행
③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 거리노숙인을 위한 캠프 운영	지자체	시행
☐ 체험프로그램을 통한 대인관계기술 및 자존감 향상	지자체	시행
4. 효율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강화		
① 거리노숙인 현황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 연도별 거리노숙인 현황 파악	보건복지부	-
☐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② 협의체 기반의 정책모니터링		
☐ 노숙인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중앙부처 협의체 구성	보건복지부	시행
☐ 중앙-지자체간 노숙인 지원협력을 위한 회의구조 마련	보건복지부	-
☐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정책모니터링 체계 구축		
③ 노숙인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		
☐ 노숙인 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	보건복지부·지자체	-